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4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한기호·김성원·강선영

김용태 · 김선교 · 김정재

권성동 • 유용원 • 김은혜

김종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,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 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 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,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 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 음.

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 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2조의3).

법률 제 호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의3 중 "유기징역"을 "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2조의3(강제추행) 폭행이나 협	제92조의3(강제추행)
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	
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	
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	
<u>유기징역</u> 에 처한다.	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
	<u> 벌금</u> .